	규정	문서번호	TWP-A513	
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운동부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2. 02. 25.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
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조직 및 업무)
- 제3조(재정)
- 제4조(운영위원회)
- 제5조(후원회)
- 제6조(수업일수 및 출석인정)
- 제7조(규정 및 지침준수)

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2018. 07. 09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		
		직 책	담 당	사 무 처 장		교 무 학 생 처 장	기 획 예 산 처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3	
		제정일자	2018. 07. 09.	
	운동부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2. 02. 25.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각종 운동부(이하 “운동부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업무)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) 운동부에는 단장, 부단장, 각 종목별 감독 및 코치 등을 둔다.

- ① 단장은 총장 또는 이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운동부를 대표하고 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- ② 부단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및 4급 이상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단장을 보좌하여 운동부를 관리 및 운영한다.
- ③ 감독은 총장이 임명하며,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선수들의 훈련계획 및 실시업무
 - 2.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및 효과적인 훈련실시 업무
 - 3.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유치에 대한 업무
 - 4. 경기의 평가 및 종합적인 분석 업무
- ④ 코치는 감독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를 지도하고 실전에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한다.
- ⑤ 행정담당은 이 대학교의 직원으로 하며, 운동부의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- ⑥ 의무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이 대학교의 보건실 직원으로 하며,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한다.

제3조(재정) 운동부 재정은 교비와 국고, 지자체, 관련 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부담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이 대학교 운동부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동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,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같음하며 사안에 따라 각 종목별 감독이 참여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운동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(사업계획수립, 경기실적평가, 기금조정 및 기타 등)을 심의 결정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후원회) 운동부의 운영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수업일수 및 출석인정) ① 이 대학교는 운동부 선수가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외의 수업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13
			제정일자	2018. 07. 09.
	운동부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2. 02. 25.
			개정번호	1

② 이 대학교는 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시즌에 따른 수업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집중수업을 개설하거나 시즌 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다른 규정의 준용) 운동부는 이 규정 외에 이 대학교 학칙, 학사규정 및 관련 단체 및 협회회의 규정, 지침, 규칙 등을 준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